



문서번호 행정 2015-0301

수 신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참조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전화 : 02-2100-6640, 팩스 : 02-2100-6638)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이은미 간사 02-723-5302 emlee@pspd.org)

제 목 권민호 거제시장의 주식백지신탁 관련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감독현황 질의

날 짜 2015. 3. 25. (총 2 쪽)

권민호 거제시장의 주식백지신탁 관련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감독현황 질의

.....

1. 안녕하십니까?

2.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보유한株式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신탁을 위탁받은 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탁株式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신동아 3월호)에 따르면 권민호 거제시장은 2010년 거제시장에 취임한 직후 자신이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주)진명의株式을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했으나, 5년째(재선포함)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주)진명이 소유한 부동산이 거제시의 '산업단지' 유치 계획과 맞물려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등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권민호 거제 시장의 주식백지신탁 처분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첫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株式의 매각 또는 신탁)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탁된株式을 처분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1회 연장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탁기관으로부터 권민호 시장의 신탁株式 처분시한에 대한 연장 요청이 몇 회 있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귀 위원회의 승인이 있었다면 몇 회에 걸쳐 승인이 이루어졌고, 승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8(신탁상황의 보고 등)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계약 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영·처분한 내용을 다음해 1월 중에 관할 공



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탁기관으로부터 권민호 시장의 신탁 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처분 상황에 대한 보고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이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권민호 시장의 신탁주식이 5년째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탁기관에 대한 귀 위원회의 감독 및 조치사항에 대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4.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공직자가 퇴직 후 처분되지 않는 주식을 다시 소유할 수 있어서, 사실상 백지신탁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민호 시장의 주식백지신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

※ 질의에 대한 답변은 4월 3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

